

# 1. 방송사업자 분담금 산정 체계

## 1-1. 최종 징수율 산정

< 기본 징수율 >

광고매출액 구간별 최소 기본징수율값 (1.0, 2.0, 3.0, 4.0, 5.0)	+	$\frac{\text{사업자별 광고매출액} - \text{광고매출액 구간 시작값}}{\text{광고매출액 구간 상한값} - \text{시작값}}$	× 조정계수
---	---	--	--------

※ 조정계수  
 중앙지상파 및 종편·보도채널 : 1  
 지역·중소지상파 : 0.931

※ 해당 연도 기본징수율이 전년도 기본징수율의 150%을 초과하는 경우, 150%에 해당하는 징수율을 해당 연도의 기본징수율로 함

×

< 징수율 추가 감경 >

- KBS·EBS(공공성) : 1/3 감경
- 지역·중소지상파 :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규모에 따라 감경
- 종편·보도채널 : 11.67% 감경
- 중앙지상파 및 종편·보도채널 : 당기순손실 발생 시 손실에 비례하여 추가 감경



최종 징수율 결정

## 1-2. 분담금 징수금액 결정

< 분담금 산출 >

방송광고 매출액 × 최종 징수율



< 면제 및 경감 >

구분	관련규정	내용
면제	시행령 제13조 제1항제1호	광고매출액 50억원 이하이며, 당기순손실 발생 사업자
	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호	재무상태표 상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사업자
경감	시행령 제13조 제1항제3호	재무상태표 상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: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분담금 경감



사업자별 최종 징수금액 결정

## 2. 방송사업자별 분담금 산정 내역 등의 공개

(단위 : %, 원)

No	방송사업자명	구분	기본징수율	징수율 감경 구분	최종징수율	분담금 감면액	분담금 감면 사유	분담금 결정액	
1	(주)문화방송	중앙지상파	4.1935%	-	4.1935%	-	-	11,495,655,620	
2	(주)에스비에스	중앙지상파	4.2817%		4.2817%	-	-	15,138,087,600	
3	한국방송공사	중앙지상파	4.1895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 제1호에 따른 1/3 감경	2.7930%	-	-	7,556,411,650	
4	한국교육방송공사	중앙지상파	2.4015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 제1호에 따른 1/3 감경 및 제5조 제4호에 따른 0.4961% 감경	1.1049%	-	-	287,945,340	
5	(주)G1	지역민방	1.8599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른 4/12 감경	1.2400%	-	-	123,858,450	
6	대구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8678%		1.2452%	-	-	127,606,320	
7	(재)불교방송	라디오	0.6117%		0.4078%	-	-	13,398,430	
8	(재)원음방송	라디오	0.2819%		0.1879%	-	-	2,844,780	
9	(재)극동방송	라디오	0.2440%		0.1626%	-	-	2,131,010	
10	오비에스경인티브이(주)	지역민방	2.0614%		1.3743%	232,115,403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	23,081,580	
11	(주)와이티엔라디오	라디오	0.2794%		0.1863%	2,035,348		759,500	
12	(재)기독교방송	라디오	2.1066%		1.4044%	15,336,157		272,666,010	
13	대전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8074%	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 제2호 나목에 따른 5/12 감경	1.0543%	-	-	102,342,240
14	전주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3554%			0.7906%	-	-	57,550,890
15	춘천문화방송(주)	지역MBC	0.9750%	0.5687%		-	-	29,778,560	
16	목포문화방송(주)	지역MBC	0.9523%	0.5555%		-	-	28,408,030	
17	(주)엠비씨강원영동	지역MBC	1.7900%	1.0442%		-	-	100,377,510	
18	(주)케이엔엔	지역민방	2.1193%	1.2362%		-	-	260,271,270	
19	(주)티비씨 방송	지역민방	1.9967%	1.1647%		-	-	183,886,490	
20	(주)광주방송	지역민방	1.9439%	1.1339%		-	-	153,283,960	
21	(주)대전방송	지역민방	1.8932%	1.1044%		-	-	125,231,160	
22	(주)전주방송	지역민방	1.3402%	0.7818%		-	-	56,269,260	
23	(주)청주방송	지역민방	1.3959%	0.8143%		-	-	61,040,730	
24	(주)제주방송	지역민방	1.2470%	0.7274%		-	-	48,719,370	
25	(주)경인방송	라디오	0.1932%	0.1127%		-	-	1,169,600	

No	방송사업자명	구분	기본징수율	징수율 감경 구분	최종징수율	분담금 감면액	분담금 감면 사유	분담금 결정액
26	(재)부산영어방송재단	라디오	0.0188%		0.0109%	-	-	11,020
27	(재)광주영어방송재단	라디오	0.0205%		0.0120%	8,211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	5,000
28	(주)와이티엔디엠비	DMB	0.1626%		0.0948%	526,872	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	300,920
29	부산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9195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 제2호 다목에 따른 6/12 감경	0.9598%	-	-	119,696,760
30	광주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7369%		0.8685%	-	-	81,012,460
31	울산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2768%		0.6384%	-	-	43,772,690
32	(주)울산방송	지역민방	1.2801%		0.6401%	-	-	44,005,050
33	여수문화방송(주)	지역MBC	0.9196%		0.4598%	22,710,632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	-
34	안동문화방송(주)	지역MBC	0.8797%		0.4399%	20,782,995	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	-
35	(주)엠비씨 충북	지역MBC	1.8886%		0.9443%	4,188,966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	101,046,280
36	(주)엠비씨경남	지역MBC	1.9222%		0.6407%	-	-	80,635,480
37	제주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1766%	0.3922%	-	-	24,784,050	
38	포항문화방송(주)	지역MBC	1.2338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 제2호 라목에 따른 6/12 감경	0.4113%	-	-	27,253,450
39	원주문화방송(주)	지역MBC	0.8802%		0.2934%	13,868,105	-	-
40	(재)평화방송	라디오	0.5670%		0.1890%	5,756,154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	-
41	서울특별시 교통방송	라디오	0.0861%		0.0287%	132,710	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	-
42	한국디엠비(주)	DMB	0.0366%		0.0122%	51,376	-	-
43	(주)조선방송	종합편성	4.0415%		3.5699%	-	-	4,904,484,900
44	(주)와이티엔	보도전문	3.1905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 제3호에 따른 11.67% 감경	2.8182%	-	-	1,677,567,420
45	(주)채널에이	종합편성	3.3792%		2.9849%	614,166,538	-	1,444,280,460
46	(주)매일방송	종합편성	3.4021%		3.0051%	93,825,211	-	2,012,857,690
47	(주)연합뉴스티브이	보도전문	2.8871%		2.5502%	308,988,086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	850,944,500
48	(주)제이티비씨	종합편성	4.0944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 제3호에 따른 11.67% 감경 및 제5조 제4호에 따른 1/2 추가 감경	1.5694%	2,852,534,175	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	50,410,390

※ 기본징수율 및 최종징수율은 소수점 네자리로 표기

### 3. 근거법령

#### □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(분담금의 면제·경감, 분할 납부 및 가산금)

-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면제·경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 
<개정 2013.10.30., 2015.6.22.>
1. 다음 각 목의 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: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 
가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 
나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
  2.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(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. 이하 제3호에서 같다) 총액 이상인 사업자 :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
  3.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: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
- 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1억원을 말한다. <신설 2020. 8. 4.>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을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하고, 제2회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. <신설 2020. 8. 4.>
- ④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 3. 29., 2020. 8. 4.>  
[제목개정 2020. 8. 4.]

#### □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-14호) 제5조(최종징수율의 산정)

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징수율을 기준 징수율로 하되, 사업자별 다음 각 호의 감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징수율을 산정한다.

1. 「방송법」 제43조의 한국방송공사 및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3분의 1을 감경한다.

2.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기본징수율에서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.
  - 가.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: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4를 감경
  - 나.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미만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없는 경우 :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5를 감경
  - 다.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: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6을 감경
  - 라.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: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8을 감경
3.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 행태,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11.67%를 감경한다.
4. 중앙지상파 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추가 감경한다.
  - 가.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: 기본징수율의 2분의 1을 추가 감경
  - 나.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: 기본징수율의 (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 대비 당기순손실 비율 × 5)를 추가 감경  
 "예시"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: 기본징수율의 100분의 5(100분의1 × 5)를 추가 감경

□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-14호) 제8조(분담금 산정내역 등의 공개)

위원회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기본징수율, 징수율 감경사유, 최종징수율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하거나 경감한 내역 및 분담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